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8 선고 2019가단44461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론 종결 2020. 5. 14

판결 선고 2020. 6. 1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,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0. 5.부터 2020. 6. 18.까지는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인테리어 금속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.

나.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로부터 직원식당 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8. 3. 15.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금속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공사대금 4,500만 원(부가세 별도), 공사기간 2018. 3. 16.부터 2018. 5. 22.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8. 5. 22.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,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공사도 실시하였다.

라. 피고는 원고에게, 2018. 6. 15.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,500만 원(부가세 별도)을 지급하였고, 추가공사대금으로 2018. 12. 28. 600만 원(부가세 별도), 2019. 1. 21. 200만 원(부가세 별도)을 각 지급하였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(1) 원고

피고는 추가공사대금으로 3,200만 원(부가세 별도)을 지급해야 함에도 800만 원(부가세 별도)만 지급하였으므로, 나머지 2,640만 원 {= 2400만 원(= 3,200만 원 - 800만 원) + 부가세 240만 원}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(2) 피고

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.

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비로소 추가공사대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.

다만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대한 대가로 800만 원(부가세 별도)을 지급하였을 뿐이다.

피고는 더 이상의 추가공사대금을지급할 의무가 없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4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피고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한 사실, 원고가 추가공사를 마친 후 추가공사에 관하여 3,900만 원(부가세 별도)의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하였고, 이후 피고와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을 3,200만 원(부가세 별도)으로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이에 반하는 을 제1, 4호증, 을 제5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공사대금 2,6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. 10. 5.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. 6. 18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정민